

대 중 교 통 과

연번	세부사업명	
1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조성	
	1-1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
	1-2	노선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기반시설 정비
	1-3	정시성 확보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2	교통약자 등 이용객 편의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2-1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2-2	바우처 택시(장애인 이동수단) 도입
	2-3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4-1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4-2	택시 감차 보상사업
	4-3	브랜드콜택시 콜비 지원
	4-4	택시·전세버스 이용 공익광고 홍보
5	체계적인 운수업체 관리를 통한 운송질서 확립	
	5-1	여객 운수업체 친절 교육
	5-2	화물 운수업체 상시 지도·점검
	5-3	법규위반 업체 및 종사자 행정처분 강화
	5-4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
6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및 불법자동차 처리	
	6-1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6-2	불법자동차 단속 및 처리

1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조성

▷(근 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필요성)

-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유도

▷(추진방향)

- 시민에게 편리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개편 추진
- 정류장 등 시설 정비와 사전 홍보로 노선 개편 조기 정착
- 신속·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 주요내용

1-1.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23. 7월 ~ 2024. 10월
- 용 역 비 : 28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수립을 위한 용역
 - 간·지선 노선체계 강화, 급행 노선 신설 검토
 - 생활권 내, 농촌지역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버스 운행 계획 수립
 -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사곡역 경유 시내버스 노선 신설
 - 강동지역 차고지 조성,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검토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착수보고회 개최 : 2023. 8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024. 2월
 -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 2024. 5~7월
 - 홍보 및 개편 시행 준비 : 2024. 8~12월
 - 노선개편 시행 : 2025. 1월(예정)

1-2. 노선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기반시설 정비

- 사업기간 : 2024. 6월 ~ 2025. 1월
- 사업내용 : 노선 개편안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정비, 대시민 홍보
- 사업비 : 791백만원(시비)
 - 신규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488백만원
 - 버스승강장 노선안내판 제작 : 180백만원
 - 노선개편 홍보 및 시간표책자 제작 : 123백만원

1-3. 정시성 확보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비 : 2,200백만원(시비)
 -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 550백만원
 - 버스정보안내기(BIT), 시내버스 LED 행선판 교체 : 650백만원
 -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1,000백만원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2901),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 (☎2926)

2

교통약자 등 이용객 편의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근 거)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성)

-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 교통약자 이동수단(바우처택시·행복택시) 확보로 이동권 증진

▷(추진방향)

- 대중교통 무료승차로 교통비 부담 해소
-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 바우처택시 도입
-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 주요내용

2-1.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 사 업 비 : 연 4,460백만원 정도(도비 1,338 시비 3,122)
 -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道 용역 중(~'23. 10.)
- 사업대상 : 어르신(7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수권유족 1명)
 - 道 조례 제정('22. 12)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 사업내용 :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무료
- 세부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 '23. 10 ~ 12월
 -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 '24. 1 ~ 5월
 - 교통카드 발급 및 시범운영 : '24. 6 ~ 12월
 - 전면 시행 : '25. 1월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 (☎2926)

2-2. 바우처 택시(장애인 이동수단) 도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비 : 558백만원(도비 122, 시비 436)
- 사업대상 :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이용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
- 사업내용 :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한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확대
- 호출방식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한 호출
-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
 - 타지자체 현황 조사 및 벤치마킹 : '23. 1 ~ 6월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 : '23. 4월
 - 택시 업계 간담회 실시 : '23. 9월
 - 바우처 택시 사업자 모집 및 협약 체결 : '23. 10 ~ 11월
 - 미터기 프로그램 설치 및 운전원 교육 : '23. 11 ~ 12월
 - 바우처택시 홍보 및 시행 : '24. 1월

2-3.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비 : 204백만원(국비 102, 시비 102)
- 사업대상 : 7개 읍면 32개 리 48개 마을
- 사업내용 : 주민 전화 호출에 따른 마을별 이용
 - 이용요금 : 편도 1,000원/인 (65세 이상 500원/인)
 - 운행구간 : 마을로부터 승강장 또는 소재지까지(구간 외 본인부담)
-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
 - 행복택시 운행마을 추가 접수 및 검토 : '23. 8 ~ 12월
 - 자동정산시스템(DRT) 도입 사업자 의견 조사 : '23. 10월
 - 2024년도 행복택시 운행협약 체결 및 요금 고시 : '23. 12월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2911)

1. 사업개요

□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운송
- 화물자동차의 도로 및 도심 주체가 불법주차에 따른 사고위험 방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8월 ~ 2025. 12월
- 위 치 : 입지 분석 용역 추진중
- 총사업비 : 미정
 - 입지분석 용역비 : 50백만원(시비)
 -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 시비 / 공사비 : 국·도·시비
- 사업내용 : 차고지(화물 200대, 승용 30대), 관리동 조성 등

2. 세부추진계획

-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3. 9 ~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4. 3 ~ 5월
-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 : '24. 6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5. 1 ~ 12월

3. 기대효과

- 원활한 물류운송을 통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완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2911)

4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필요성)

- 운수업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
-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 가중
- 택시 공급과잉 및 플랫폼 기업 독점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추진방향)

- 비수익 노선 결손액 보전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
- 택시업계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주요내용

4-1.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내용 : 수익이 없는 노선 운영, 공적 부담에 따른 결손액 보전 등 대중교통서비스 사업자 지원
- 사 업 비 : 17,170백만원(국비 645, 도비 719, 시비 15,806)

구 분	계	재 원 별 (단위 : 백만원)			
		국 비	도 비	시 비	기타(지방채)
계	17,170	645	719	15,806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204		532	532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360		63	297	
벽지노선 손실보상	1,451	435	102	914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715			8,715	
교통카드 요금할인 손실보상	993			993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보상	3,723			3,723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	420	210		210	
공영버스 구입 지원	444		22	422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 (☎2926)

4-2. 택시 감차 보상사업

- 사업기간 : 2024. 5월 ~ 7월
- 사업비 : 1,128백만원(국비 78, 도비 55, 시비 775, 감차재단 220)
 - * 감차재단 지원(대당 법인 10백만원 / 개인 15백만원)
- 보상금액 : 감차위원회 심의 결정('23. 10.)
 - * 2023년 보상가 : 법인택시 43백만원, 개인택시 110백만원

4-3. 브랜드콜택시 콜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비 : 216백만원(시비)
 - 산출내역 : 3만원 × 600대 × 12개월 = 216백만원
- 지원대상 : 브랜드통합콜택시 600대(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방법 : 콜 이용내역 확인 후 구미통합콜택시조합 입금
 - 야간콜(21시~02시) 거부시 회당 콜비 1만원 차감 ⇒ 야간콜 활성화
 - 불친절 민원 발생시 콜비 제한 ⇒ 택시 불친절 개선

4-4. 택시·전세버스 이용 공익광고 홍보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계속사업 : 택시(2019년 ~), 전세버스(2023년 ~)
- 총사업비 : 480백만원(시비) ※ 택시 330 / 전세버스 150
- 사업주관 : 구미시(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법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 사업내용 : 택시, 전세버스 이용 공익사업 및 문화관광 자산 홍보
- 사업대상
 - 택시 : 800대(개인 600, 법인 200)
 - 전세버스 : 110대(상반기 55, 하반기 55)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2901), 택시화물팀 (☎2911)

5

체계적인 운수업체 관리를 통한 운송질서 확립

▷(필요성)

- 사업용 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로 운송질서 확립 필요
-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 조성 필요

▷(추진방향)

-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운수업체 점검 및 법규위반 단속으로 주민 신뢰 제고

□ 주요내용

5-1. 여객 운수업체 친절 교육

- 대 상 : 7개 업체(버스2, 택시 5) ※ 법인택시 4, 개인택시지부 1
- 내 용 : 친절 교육 실시로 승객 편의 제공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5-2. 화물 운수업체 상시 지도·점검

- 대 상 : 2,654개 업체(일반 256, 개인 2,257, 주선 147)
- 내 용 : 화물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점검으로 건전한 화물운송 제고

5-3. 법규위반 업체 및 종사자 행정처분 강화

- 대 상 :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 내 용 : 법규위반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승객 편의 제공

5-4.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

- 대 상 :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 내 용 : 주 1회 이상 주택밀집지역, 공단지역 이면도로 등 지도단속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2901), 택시화물팀 (☎2911)

6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및 불법자동차 처리

▷(필요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사업 문화 조성
-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처리로 교통행정 신뢰구축

▷(추진방향)

-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를 통한 알선·강매·호객행위 등 부정 행위 근절 및 시민의 금전적 피해 예방
- 불법차량 처분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 주요내용

6-1.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 자동차관리사업자 분기별 지도·점검 추진
 - 점검대상 : 관내 매매업(76개소), 정비업(357개소), 폐차업(3개소)
 - 추진내용 : 자동차관리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 적발

6-2. 불법자동차 단속 및 처리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점검 추진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위반자 범칙금 부과
 - 대 상 : 도로 방치된 차량 또는 타인 토지에 2개월이상 방치된 차량
 -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추진절차

주민신고 및 발생보고	강제견인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방치혐의조사(특사경)
· 경고장부착 · 자진처리협조	· 자진처리명령 · 범칙금부과	· 이해관계인통보 · 범칙자적발보고	· 주소지 이첩 · 검찰송치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차량팀 (☎2921)